

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연구센터 HK교원 업적평가 규정

제 정 : 2009. 3. 1.
개 정 : 2011. 5. 1.
개 정 : 2012. 6. 22.
개 정 : 2013. 5. 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 HK사업 시행에서 요구되는 연구업적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기준 및 연구소 내 수행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본교 불교문화연구소 소속 HK교원에게 적용한다.

② 연구업적평가 결과는 재임용, 승진임용, 정년보장임용, 인센티브 지급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한다.

제3조(평가원칙) ① 연구업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연구업적 평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.

② 평가는 매년 3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간(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)의 업적을 평가한다.

제2장 평가기구 및 절차

제4조(연구업적평가)① HK교원의 연구업적평가를 위하여 HK연구업적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HK연구업적심사위원회 구성은 HK기획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, 인원은 교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한다.

③ HK연구업적심사위원회는 HK교원의 연구업적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, 연구소 내 사업수행 평가를 담당한다.

④ 평가대상 HK교원은 평가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해당기간의 업적자료를 연구실적점수 산정표(지정서식)에 연구업적 점수를 산출하여 기재하고, 연구실적물을 첨부하여 불교문화연구소에 제출한다.

제5조(HK인사위원회 심의) HK연구업적심사위원회에서 평가된 자료는 HK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다.

제6조(재심신청) ①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HK교원은 평가점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(소명자료 첨부)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평가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자가 있을 경우 총장은 HK연구업적심사위원회 및 HK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.

제3장 평가방법

제7조(평가항목 및 구분)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은 3개 영역을 기본으로 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.

1. 개인연구업적의 정량적 평가
2. 개인연구업적의 학문적 탁월성과 학계에 대한 영향력 평가
3. 소속 연구소 내 사업수행 평가

제8조(개인연구업적의 정량적 평가) 개인연구업적의 정량적 평가항목과 인정환산율은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 제3항에 따른다.

제9조(개인연구업적의 학문적 탁월성과 학계에 대한 영향력 평가) ① 개인 연구업적의 학문적 탁월성과 학계에 대한 영향력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는 (별표1)과 같으며,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.

② 삭제

제10조(소속 연구소 내 사업수행 평가) ① 소속 연구소 내 사업수행 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점은 (별표2)와 같으며,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.

② 삭제

③ 삭제

제11조(연구업적 인정범위) ① 연구업적물은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3조 제4항의 실적물 환산율에 따른 100%를 1편으로 한다.

② 학술지 게재 이전 전자출판된 논문과 발행예정일이 평가기간내로 확정된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한 논문의 경우에는 인정한다.

제4장 HK교원의 재임용 기준

제12조(재임용 기준) ① 삭제 <2013. 5. 1.>

② 삭제 <2013. 5. 1.>

제5장 HK교수의 승진임용 기준

제13조(승진임용 기준) 삭제 <2013. 5. 1.>

제14조(승진임용의 유보) 삭제 <2013. 5. 1.>

제6장 HK교수의 정년보장임용 기준

제15조(요구업적평가 점수) 삭제 <2013. 5. 1.>

제16조(신청절차) 삭제 <2013. 5. 1.>

제7장 기 타

제17조(정성적 평가 기준) ① 제7조 2호와 3호의 정성적 평가는 재임용, 승진임용, 인센티브 지급, 정년보장의 평가에 적용하며,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에서 정할 수 있다.

② 제7조 2호의 정성적 평가에는 재임용, 승진임용, 정년보장 임용 교원은 임용기간동안 발표한 연구논저 중 대표적인 업적 2편에 대한 질적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8조(질적 평가를 위한 연구논저의 인정범위) ① 연구소 전문분야에 관한 연구저서·번역서 및 논문으로서 서평, 논평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.

② 연구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지 및 국내외 저명 학술지 이상에 게재된 단독 논문이어야 한다.

제1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교원업적평가규정과 연구전임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이행한 HK사업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개인연구업적의 학문적 탁월성과 학계에 대한 영향력 평가

평가항목 및 배점기준	평 점
① 주제선정의 적합성과 창의성(10점) ② 내용서술과 방법론의 우수성(10점) ③ 논문구성의 타당성과 체계성(10점) ④ 참고문헌의 인용, 각주의 정확성과 일관성(10점) ⑤ 기존학계의 성과반영과 학문적 의의(10점)	
학계 영향력 (50점) - 등재지의 종류(20점) - 학문적 공헌도(30점)	
합 계(100점)	

(별표 2)

소속 연구소 내 사업 수행평가

평가기간 : 20 . . . - 20 . . .

평가항목 및 배점기준	평 점
1. 근무태도(40점) - 연구소 사업 참여(20점) - 각종 규정 준수(10점) - 동료들과의 협력(10점)	
2. 사업 수행(60점) - 팀별 공동 강독 및 사업수행(40점) - 기타 과제 수행(20점)	
합 계(100점)	